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 · 운영에 관한 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신기술·신제품 첨단소방장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장비 시범단을 편성 ·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◇ 주요내용

가.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첨단소방장비의 자체 도입 또는 시·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조)

나.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대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며, 소방장비 시범단을 수행함에 있어 시·도 소방기관과 협력한다.(안 제4조, 제6조)